

■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

<input type="checkbox"/> 국내 <input type="checkbox"/> 국제 <input type="checkbox"/> 소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정기편 노선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정기편 운항	<b>변경허가 신청서 (변경신고서)</b>
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※ 소형항공운송사업의 부정기편 운항의 경우에는 신고서이며,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정기편 노선허가 15일 부정기편 노선허가 5일 (군공항은 10일)
신청인	상호(법인명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(소재지)		전화번호
			팩스번호
신청내용	개설노선명 또는 항행의 경로		
	변경내용		

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6항, 제1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8항, 제14조제5항에 따라

정기편 노선  을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합니다.  
 부정기편 운항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 
지방항공청장

귀하

첨부서류	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	수수료 「항공사업법 시행 규칙」 제71조
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허가관련 조치하여야 할 사항

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(국제선 허가 신청 시, 전화번호 : 044-201-4212), 항공산업과(국내선 허가 신청 시, 전화번호 044-201-4228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